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6

2023. 11. 27.(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16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안 제2조 및 제3조)
- ❍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의결 방법 및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 위원회 사무처리 등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조사·연구 의뢰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지난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음. 이후 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위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번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함.

- 안 제2조~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음.

- 안 제5조~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사무처리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규정함.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되,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명시함.

❍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 지방시대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된 위원회가 종전의 유사한 조직 및 정책과 비교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내실있는 정책 추진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북도의회의원
5.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 · 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 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도 계획 및 시 · 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 · 도 지역 산업 · 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 · 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 · 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 · 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 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 · 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 · 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 운영) ①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 · 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

원에 관한 사무
2.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 · 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에 관한 사무
4. 시 ·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 · 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 · 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 · 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 · 협력, 조사 · 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 · 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 ·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 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처리와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관련조문(안 제8조,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사업 96,500천원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사업 : 산업부(균특회계)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원

**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분권(분권협의회)과 균형발전(지역혁신협의회) 통합

*** 충청북도 지역혁신지원단 →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변경

나. 추계 결과 : 연간 96,500천원, 향후 5년간 539,7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5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국비)		96,500	109,300	110,300	111,300	112,300	539,700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96,500	109,300	110,300	111,300	112,300	539,700
세 출		193,000	218,600	220,600	222,600	224,600	1,079,400
인건비		125,800	126,000	128,000	130,000	132,000	641,800
운영비		47,200	42,600	42,600	42,600	42,600	217,600
연구개발비		2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20,000
재원 조달		193,000	218,600	220,600	222,600	224,600	1,079,400
의존재원	보조금 (균특회계)	96,500	109,300	110,300	111,300	112,300	539,700
자체재원	도비	96,500	109,300	110,300	111,300	112,300	539,700